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30
----------	------

발의연월일 : 2021. 2. 25.

발 의 자 : 강선우 · 고영인 · 김승원
김진애 · 남인순 · 맹성규
윤관석 · 이원택 · 정성호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닌 탓에 부모의 수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법률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용자가 보호자인 유아의 양육환경에 관한 기준 및 양육지원
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여성수용자는”을 “수용자는”으로, “출산한”을 “보호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수용자가 보호자인 유아</u> <u>의 양육환경에 관한 기준 및</u> <u>양육지원에 관한 사항</u>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u>여성수용</u> <u>자는</u> 자신이 <u>출산한</u> 유아를 교 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u>18개</u> <u>월에</u>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u>수용자는</u> <u>-----보호자인-----</u> ----- -----. ----- ----- <u>36개</u> <u>월-----</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